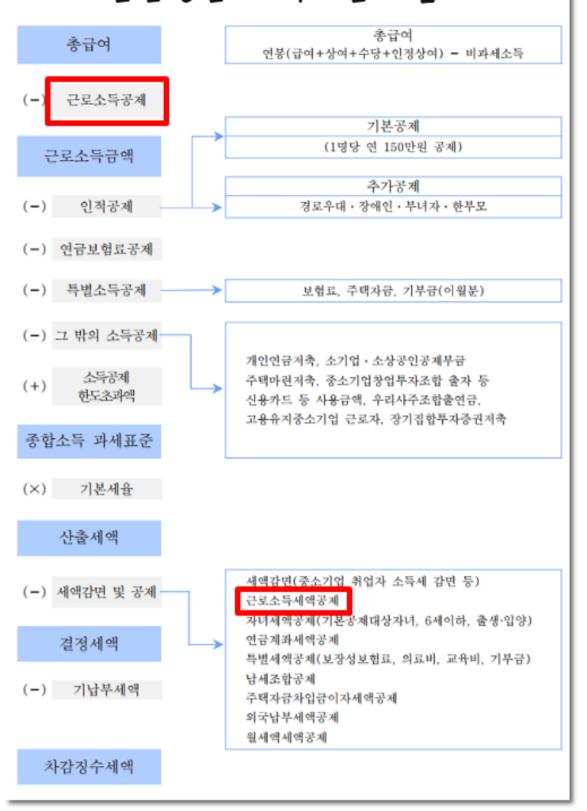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직장인들의 가치는 '연봉'으로 매겨진다.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 직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은 물론 생활의 질도 달라진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연봉과는 다른 개념으로 진행된다. 연봉에서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를 기본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과세표준'이 근로소득세를 얼마내야하는지(연말정산 환급액)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쉽게 말해 내 연봉이 1000만원이라면 <u>각종 비과세소득을 제하고</u>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 득공제를 적용해 500만원이 나왔다면 이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총급여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액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50 0만~1500만원 구간은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1500만~4500만원 구간은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 4500만~1억원은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공제받는다. 총급여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엔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공제한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义 经经验对二音的对一程经验测量对

예를 들어 A씨의 연봉이 5000만원이고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750만원에 총급여 1500만원을 초과한 3500만원에 대한 15%(375만원)을 더하면 총 112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이 나온다.

총급여액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 1125만원을 제하면 2875만원이 나오는데, 이 것이 A씨의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다.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연구활동비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공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근로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적공제와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에 해당됩니다.

사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장사를 하기 위해 지출했던 금액들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듯이 말이죠.

그러나 <mark>근로소득의</mark>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첫번째로 공제하는 구간입니다. 위의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보시다 시피,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야만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것이죠.

근로소득공제 다음은 무엇?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과세표준 × 15%)
4,600만원 이하	100분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과세표준 × 24%)
8,800만원 이하	100분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과세표준 × 35%)
1.5억원 이하	100분의 35)	- 1,490만원
1.5억원 초과	3,760만원 + (1.5억원 초과액의	(과세표준 × 38%)
3억원 이하	100분의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과세표준 × 40%)
5억원 이하	100분의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42)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했다고 해서 바로 과세표준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했다면 <u>그 다음에는 인적공제를 비롯해 각종 소득공제를</u> 적용해야 과세표준이 나온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인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가 있다면 추가공제(200만원·100만원)를 더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이 지점에서 적용한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신용·체크카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총급여액의 25%)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소득공제율이 80%까지 늘어나면서 혜택이 더욱커졌다.

이밖에 개인연금저축(납입액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납입액 40% 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등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과 세표준이 나온다.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내야 할 소득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다면 NO!...세액공제가 남았다.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130만원) X 30%	
Ⅰ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 X 0.008]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 X 1/2]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조세일보 /그래픽=조혜미	

과세표준이 나와 세액을 계산했다고해서 끝이 아니다. 세금에서 또 공제를 해주는 <mark>세액공</mark>제 과정이 남았다.

흔히들 알고 있는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여기서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세액공제 금액이 생각보다 쏠쏠하다. 소득공제에서는 근로소득공제로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어줬다면, 세액공제 단계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부담을 한 번 더 빼주는 것이다.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한 뒤 나온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해주며 130만원 이상이라면 초과금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2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왔다면 66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결정세액은 54만원이 된다.

다만 무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제한도가 정해져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데, 총급여가 3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7000만원 이하 경우에는 '74만원-(총급여-3300만원)x0.008'로 계산한다. 산출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66만원-(총급여-7000만원)x1/2'로 계산하되, 50만원 이하는 50만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이에 더해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게 된다.

만약 최종 결정세액이 80만원이고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가 150만원이었다면 결정세액 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0만원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공제받을 것이 별로 없어 결정세액이 200만원이 나왔고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낸소득세가 1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